

# || 인공지능융합학과 ||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 | 교육목적 |

기독교 전인교육의 철학적 토대 위에 인간지능에 버금가는 컴퓨터 지능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에 맞추어 인공지능 및 지능형 반도체 산업의 전문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공학적 전문역량 함양을 기본으로 인문 사회학적 소양과 경영적 통찰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미래 지향적인 인공지능 및 지능형 반도체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21세기 인류의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교육목표 |

을 기반으로 OASIS 생태계를 주도할 R&BD 인재를 양성한다.

1. (On-demand) 사회 수요에 부합하고 창의적이고 경영을 이해하는 AI 기반 IT 전문 인재 양성
2. (Artificial Intelligence) 정보분석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과 목표지향 AI 인재 양성
3. (SW/HW) IT융합기술과 경영 마인드를 통섭할 수 있는 IT융·복합전문 인재 양성
4. (Information) 공공·경영 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창업가형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5. (Search) R&BD를 주도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 내 규 |

제1조 (전공) 본 학과의 전공은 인공지능공학, 지능형반도체공학,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을 둔다.

제2조 (입학)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제3조 (교육과정)

- ①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하는 논문연구학점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 학과와 관련성이 깊은 교내의 타 학과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아래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은 대학원 공통 3학점, 전공선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 박사과정은 대학원 공통 6학점, 전공선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공통 6학점, 전공선택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구 분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대학원 공통 전공선택 논 문	3 21 P	6 51 P	6 36 P
합 계	24	57	42

제5조 (외국어시험)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제6조 (종합시험)

- ①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 ② 시험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한 3과목으로 한다.

제7조 (학위논문)

- ①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 ② 석사과정은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학진 등재 후보지) 또는 국제 일반학술지 이상의 학술지(SCI, SCIE, SCOPUS급)에 제1저자로 학생 본인, 교신저자는 지도교수로 하여 투고된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은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학진 등재 후보지) 또는 국제 일반학술지 이상의 학술지(SCI, SCIE, SCOPUS급)에 제1저자로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학위논문 심사가 가능하다.

제8조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위원회)

- ① 목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각 학과의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회기 위하여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위원회를 둔다.
- ② 구성: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위원회는 학과장과 학과교수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기능: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및 심의, 의결한다.
  1.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수정
  3.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4. 입학사정 및 졸업사정
  5. 논문지도 제반사항
  6.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
  7.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8. 장학생 선발
  9. 학과운영예산
- ⑤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9조 (원우회) 학생들의 연구 및 협력을 도모하는 자치기구인 인공지능융합과학과 원우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 부 칙 |**

1. 본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교과과정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과학과 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내규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